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5 - 3
안건유형	보고

보육활동 존중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동력

---

#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2025~2029년)

---

2025. 5.



교육부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황 및 문제점	
① 보육활동 보호 제도 현황 .....	2
② 보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현장 인식 .....	3
③ 보육활동 보호 운영 현황(문제점) .....	4
III. 추진 방향 .....	6
IV. 추진 과제 .....	7
①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	7
②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 .....	11
③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 .....	15
④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 .....	18
V. 추진주체별 역할 .....	21
VI. 향후 추진일정 .....	22

# I. 추진 배경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정책은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임

○ (사회적 배경) '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영유아 수는 '31년까지 지속 감소('22년 대비 23.4%↓) 할 것으로 예상됨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2~'31년 영유아 인구수 추계 <통계청, '24년>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영유아수(만명)	188	173	162	151	144	139	137	137	139	144

☞ 저출산에 대응하여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돌봄환경 제공이 필수적임

○ (제도적 변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24.8.)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체계 마련과 유아 인권 보호제도가 도입됨

## 【참고】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정책 수립 의무화,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보호자의 역할 및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 강조, 보육활동 협력 의무 강화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제7조, 제18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개정,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2 개정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고 보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보육활동 보호 대책 필요

➤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

## Ⅱ. 보육활동 보호 현황 및 문제점

### 1. 보육활동 보호 제도 현황

- (법적근거)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와 원장, 보호자 등 의무 부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24.8.7.시행) 및 동법 시행령(’24.8.14.시행) 개정

- (국가·지자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의무화 (제18조의3)

\* ①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및 예방, ② 보육활동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③ 분쟁의 조정 ④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상담 ⑤ 그 밖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쟁조정) 중앙·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의4)

- ① (중앙) (구제) 중앙보육정책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구성

(기능)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심의 등

- ② (시도) (구제) 담당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호자, 변호사 등

(기능)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분쟁의 조정

- (어린이집) 원장의 민원 총괄 및 보육활동 보호 의무, 영유아 생활지도 및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조치(제18조, 제18조의5, 제18조의7)

- (보호자)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협력 근거 마련 (제18조의6)

- (침해 기준 등) 보육교사 권리보호 매뉴얼(’22) 및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23)에서 보육활동 침해기준\* 및 대응 절차 등을 안내 중이나, 법제화(’26~)를 통해 실효성 확보 필요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소속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을 제한 받는 모든 행위

## 2.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인식 < 자료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4~'25 >

### ① 어린이집 피해를 우려하여 보육활동 침해에 소극적 대응 경향

- 어린이집 피해\* 등을 우려한 보호자 중심 문제 해결\*\*, 침해 인식 부족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54%가 보육활동 침해 경험 (36%는 4회 이상 노출)
  - \* 어린이집 영유아 수 감소('24년 94만명, '22년 대비 16.5% 감소)로 어린이집은 원아 확보에 민감
  - \*\* 원장 45.6%, 보육활동 침해 시 원아모집 어려움 등으로 보호자 중심 문제 해결(한국보육진흥원 '24년)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이 침해되거나, 침해를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면,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어린이집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 \* 보육활동 침해 영향으로 보육교직원은 근무의욕을 상실(39.2%)하고, 이직 또는 퇴직 고려(20.4%), 건강 악화(21.7%), 스스로 극복(18.3%) 응답(한국보육진흥원 '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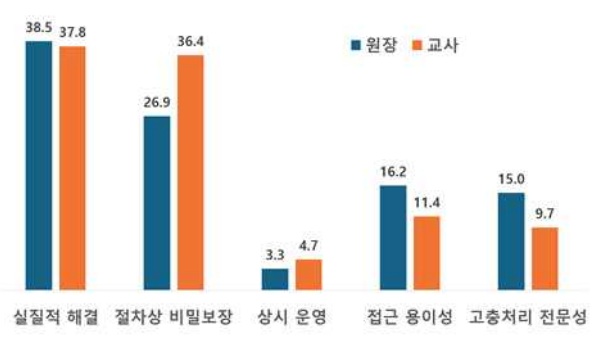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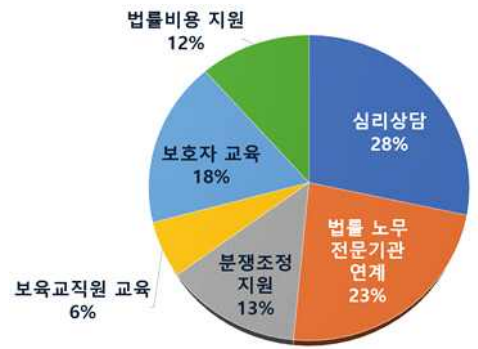
### ② 실질적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제도와 지원 요구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명확한 조치기준 법제화와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시스템 필요
- 보육교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 필요

“ 보육교사 권리보호 매뉴얼과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시장님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해 주세요” (원장 2)

- 특히, 보육교직원의 요구(① 심리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51%), ② 분쟁 조정 (25%), ③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24%) 순)를 반영하여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희망분야 》      《 보육활동보호제도 관련 개선 요구사항 》



< 출처 : '24.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체계 개발 >

### 3. 보육활동 보호 운영 현황(문제점)

- (보호제도의 실효성 부족)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
  - (침해행위 기준 및 보호조치) ①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②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③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과태료 등) 법제화 필요
  - (보호조치 구체화) ①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 ② 보육활동 침해행위 종류, ③ 보호조치 종류 및 절차 ④ 보육활동보호센터 근거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필요
  - (실효성 강화) ①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운영 해설서, ②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③ 어린이집 보육활동 분쟁조정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육활동 개념 이해를 통한 보육활동 침해 대응절차 체계화
- (운영 현황) 보육활동 보호 심리·상담을 추진 중이나 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보호 지원사업 추진 중으로 지역별 편차 발생
  - (지원 부족)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등 심리·정서 지원(16~) 및 보육활동보호센터 시범운영(24.8~) 권익보호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중이나 직접적인 대응 지원 부족
    - \* (인성교육) ('24) 13억원, 25천명 → ('25) 13억원, 25천명 (보육활동보호센터 3억원 포함)
    - \* (상담지원) ('24) 15백만원, 31,000명, 20,707건 → ('25) 22백만원, 20,707건
    - \* (대체교사) ('24) 59억원, 3,923명 → ('25) 61억원, 3,927명
  - (지역 격차)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광역 12곳, 기초 58곳), 보육활동 중 형사 분쟁 관련 보험 가입(79곳), 고충처리전담기구(서울·경기)운영 중이나, 지역별 편차 발생
    - ※ (제정)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 (미제정) 대구, 울산, 강원, 충남, 경북
- (인식 개선)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보육활동 침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필요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관련 행·재정적 지원과 인식 개선 홍보 확대 필요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제화 추진 경과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23.8.)**
  - ①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④ 정부 책무성 및 지원 강화
- **교권보호 4법\*이 개정·시행되어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장치 마련('23.9.27)**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국민청원(엄정섭 외 50,000명) 접수('23.9.)**
  - 어린이집 교사가 보호자부터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 호소.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 요청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활동 보호 법제화('24.2.)**
  - ① 국가와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추진, ② 대체인력의 배치,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 책임, ④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심의기구 설치, ⑤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 마련, ⑥ 보호자의 협력 의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24.8.)**
  - ① 국가와 지자체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 절차, ②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방법,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 추진**
  -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24.9, '24.10), 고시 제정(안) 법률 자문('24.1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추진 경과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체계 개발 정책연구 ('24.3.~ 7.)**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관련 심층면담(원장 5명, 보육교사 5명) ('24.4.)**
  - ① 보육활동 침해 인식, ② 보육활동 침해 경험 ③ 보육활동 침해 시 대응, ④ 보육활동 침해 시 지지체계, ⑤ 개선 요구사항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관련 설문조사 (예비조사 '24. 4.29.~5.1 본조사 '24.5.2.~5.12)**
  - (응답자) 원장 249명, 보육교사 433명 - (조사문항) 총50문항
  - (조사내용) ① 재직기관 특성, ② 성별.연령.결혼유무 ③ 보육활동 침해 인식 ④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경험 및 대응 ⑤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사례 발생 시 지원체계 ⑥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요구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5개년) 수립 관련 현장의견 수렴 ('25.1.17.~1.24.)**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1.17),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1.21),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1.2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1.24)
- **지자체별(광역·기초)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사업 현황 조사('25.1.15~2.7.)**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25.1.~2.)**
  - 1차 회의(1.21), 2차 회의(2.7), 4차 회의(2.13), 5차 회의(2.21), 6차 회의(2.25)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실효성 확보 관련 법률 자문('25.1.15~2.11.)**
  - 변호사 3인, (자문결과) 보육활동 보호 시책 및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 후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필요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형사 분쟁 보험 관련 업무협약('25.2.18.)**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안) 현장의견 수렴('25.3.7,4.2)**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관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 14명, 등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위원회 개최('25.3.12, 4.15.)**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안) 지자체 담당자 협의회 개최('25.3.25, 4.15.)**

### Ⅲ. 추진 방향

<b>비전</b>	보육교직원-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어린이집
-----------	------------------------------



<b>목표</b>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보호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	----------------------------------



추진 과제	
<b>1.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마련</li> <li>② 보육교직원-보호자 간 상호 소통 활성화</li> <li>③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li> </ul>
<b>2.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마련 및 자체 조정역 강화</li> <li>② 피해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강화</li> </ul>
<b>3.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분쟁의 조정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li> <li>② 보육활동 침해행위 및 침해 보호자 조치기준 마련</li> <li>③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li> </ul>
<b>4.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li> <li>②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li> <li>③ 교사-보호자 상호 존중 문화 조성</li> </ul>

## IV. 추진 과제

### 1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여 보육활동 기준을 정립하고,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 주요 추진과제

- 보육교직원 영유아생활지도 제정('25.上) 및 고시 해설서 제작.배포('25.下)
- 보육교직원-보호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자료 제작.홍보 및 소통역량강화 교육 제공('25.~)
-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법제화('25.) 및 예방교육 실시('26.~)

#### 가.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마련

- (생활지도)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25.上) 하여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구분
  - ※ (일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25.4.) → 고시 제정('25.上) → 현장 적용('25.下)

#### 《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안) 》

<b>목적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을 정함</li> <li>▶ (정의) ‘원장’, ‘교사’, ‘취약보육 영유아’, ‘영유아 생활지도’ 및 지도행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에 대해서 용어의 뜻을 정함.</li> </ul>
<b>3주체 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li> <li>▶ (영유아) 원장·교사의 생활지도 존중</li> <li>▶ (원장 및 교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영유아-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사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li> </ul> </li> <li>▶ (보호자) 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보육 활동 협력</li> </ul>
<b>생활 지도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발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li> <li>▶ (보건·안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위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li> <li>▶ (인성·관계) 품성 및 예절, 의사소통 행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소지·사용</li> <li>▶ (기타) 취약보육 영유아(만3세 미만 영아, 장애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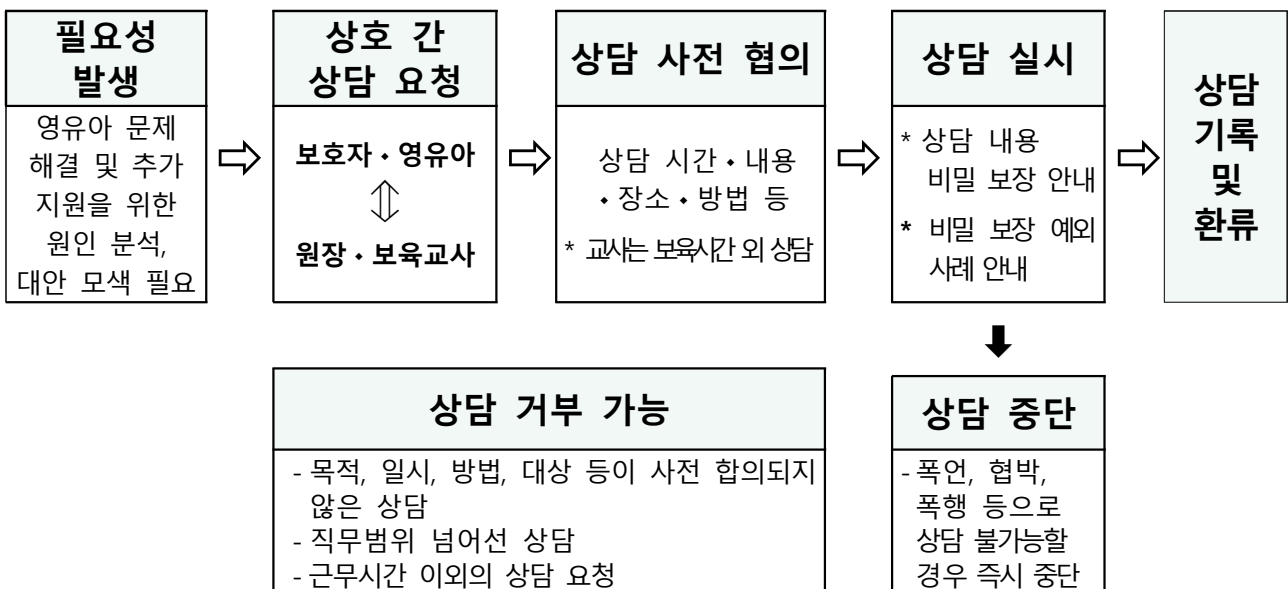
<b>생활 지도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언) 도움을 요청하는 보호자에게 조언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 가능</li> <li>▶ (상담) 영유아의 문제 해결이나 지원을 위해 누구든지 상담 요청 가능, 상담시간·방법 사전 협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 및 폭언·협박·폭행 시 상담 중단 가능 등</li> <li>▶ (주의) 안전 저해 소지 시 주의와 훈육 가능, 불응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육교직원 책임 면제</li> <li>▶ (훈육·훈계) 지시, 제지(구두, 물리적), 물품 분리보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물리적 제지 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림</li> <li>- 영유아의 질병·건강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 요청 가능</li> </ul> </li> <li>▶ (보상)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 보상 가능</li> </ul>
<b>그 밖의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보육 영유아 지도) 원장과 교사는 영아·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를 보호자와 상호 협의</li> <li>- 원장의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반 편성 담당 교사의 연수 및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협력 지원,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반 편성 노력</li> </ul> </li> <li>▶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생활지도 불응 시 보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판단 후 조치 가능</li> <li>▶ (이의제기) 보호자는 생활지도 불응 시 14일내 이의제기 가능, 원장은 14일내 답변, 2회 이상 답변 후 반복되는 이의제기 거부 가능</li> </ul>

-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으로 위임한 사항\*, 어린이집 자율 결정 사항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하는 고시 해설서 제작·배포(25.下)

\* 그 밖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소지를 금지한 물품,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 (보호자 상담 가이드라인) 영유아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보호자와의 상담 중 지켜야 할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포함

**< 상담 절차의 예시 >**



## 나. 보육교직원-보호자 간 상호소통 활성화

- (보호자 참여 활성화) 입소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참여 수업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보호자 소통 시간 활성화\*

\* 어린이집 경영방침, 영유아 생활지도 이해, 영유아기 특성과 어린이집 보육활동 방식 등

- (어린이집 이해도 제고)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 개발('26.)

-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시 활용하도록 보급

\*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영유아 생활지도, 보육활동 보호 등

(미국 텍사스 주 사례) 보호자 행동 준수지침(Parent Code of Conduct) ▲부적절한 언어 사용 금지, ▲갈등 해결 및 대화 방식 ▲훈육 및 지도 원칙 준수, ▲금연 및 금연 제품 사용 금지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복장, ▲기밀유지

- (소통역량 강화)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구성원 대상 영유아·보호자와의 소통역량 향상 지원('25.~)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상담·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교육 운영

※ ('25) 4회, 4,000명 → ('26) 10회, 10,000명 → ('27) 15회, 15,000명 → ('28) 20회 20,000명

- 보육활동보호센터, 찾아가는 부모 상담 교육 및 상담실 운영('26.~)

\* (예시) 서울시, 찾아가는 상담버스(버스에서 전문상담사가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 다. 보육활동 침해 예방

- (예방교육 법제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25~)하여 원장의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연1회) 근거 마련

※ (예시)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하여 보육교직원·보호자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배포(~'26.)

- (보육교직원) 빈도수가 많은 침해 유형의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 ※ (어린이집 침해 유형) 모욕·명예훼손, 자녀중심의 무리한 요구, 온라인 상 명예훼손 등
- (보호자) 보호자의 침해 예방 및 권리 존중을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예방교육 자료 탑재·안내

< 보육 주체별 보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안) >

보육교직원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관련 법령의 내용</li> <li>•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li> <li>• 보호자 대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li> <li>• 원장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li> <li>• 보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li> <li>• 보육교직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li> <li>• 가정에서의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원장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 (예방교육 실시)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연간 교육계획 및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하여 연 1회 예방교육 실시

- (어린이집 교육) (교직원) 교사 회의 및 교사 교육, 원격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보호자)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SNS,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방교육 실시

- (전문교육 제공)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및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전문기관의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프로그램 확대

① 보육활동보호센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침해 대응방안 등 전문 교육 운영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 실시간 비대면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 확대

※ (‘25) 6회, 1,800명 → (‘26) 15회, 5,000명 → (‘27) 25회, 10,000명 → (‘28) 30회 15,000명

< 보수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분야별 대상자		교육내용	시간
직무	일반직무교육	3년마다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	업무 시작 전 (채용 6개월 이내)	
승급	2급 승급교육	3급 취득한 후 경력 1년 이상	80시간
	1급 승급교육	2급 취득한 후 경력 2년 이상	
	원장 사전 직무교육	원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 2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를 위한 합리적 절차 및 피해보육교직원 보호조치 마련

###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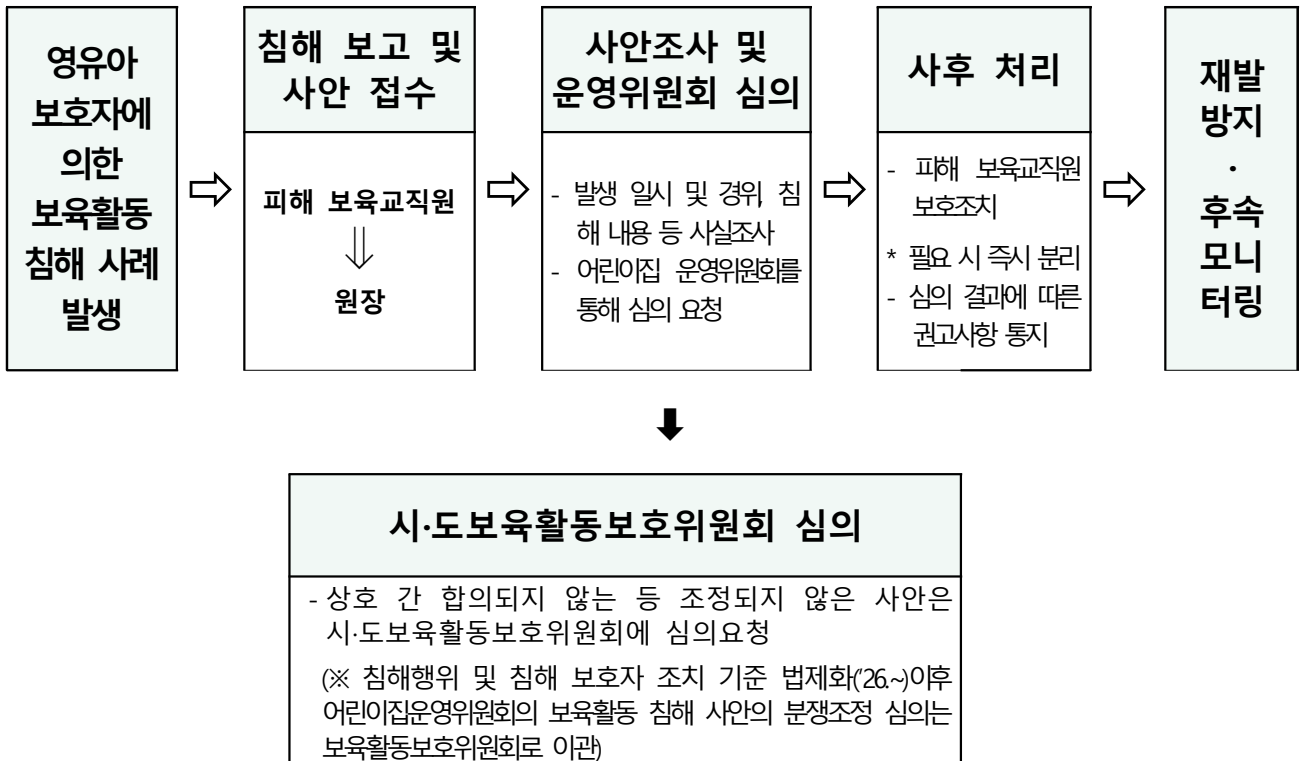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피해보육교직원 보호조치 법제화('25.)
- 모든 지자체 내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시범운영('25) → 19개소('26) → 기초단위 확대('27~))
- 지자체 보육교직원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 확대('26.~)

### 가.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합리적 대응 및 자체 조정역 강화

○ (어린이집 초기 대응)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초기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침해 사안 대응 절차 등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5下)

#### < 초기대응 절차의 예시 >



○ (원내 업무담당자 지정)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맞게 지정

- (사안인지·즉시분리) 보육활동 침해 인지 즉시 보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보육교직원을 즉시 분리조치, 당사자 면담 실시  
※ 분리조치 시 피해보육교직원의 의사 확인 필요
- (우선조치)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 또는 다른교사와 협력하여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하고 업무대행자 지정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원장 요청 외에도 피해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활동 침해사안 심의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 (피해교원 보호조치) 원장은 보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즉시분리·우선조치 및 피해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근거조항 신설 추진('25.下 )

※ (예시) 교원지위법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대체교사 지원) 원장은 피해보육교직원에게 보호조치 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하여 보육공백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사유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1~10일)

## 나. 피해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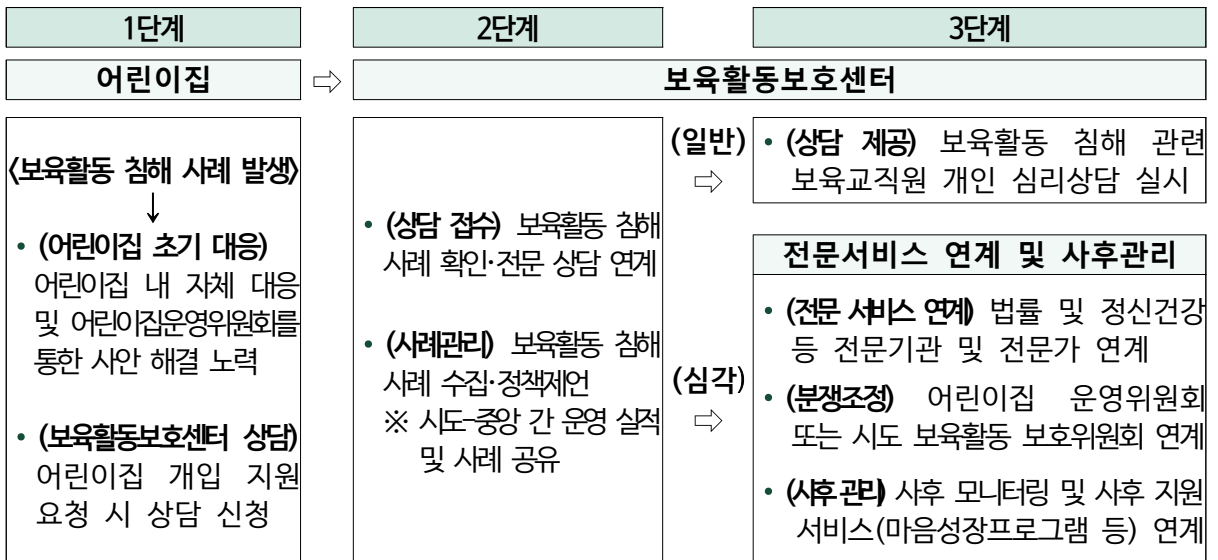
- (보육활동보호센터) 시범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보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 교사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 보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① 보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② 업무 담당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③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	④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⑤ 보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 중점이 다름

-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육활동 보호센터 설치·운영 규정(훈령) 마련('25.~)
- (설치 확대 및 기능 강화) 모든 지자체 내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대상 정서·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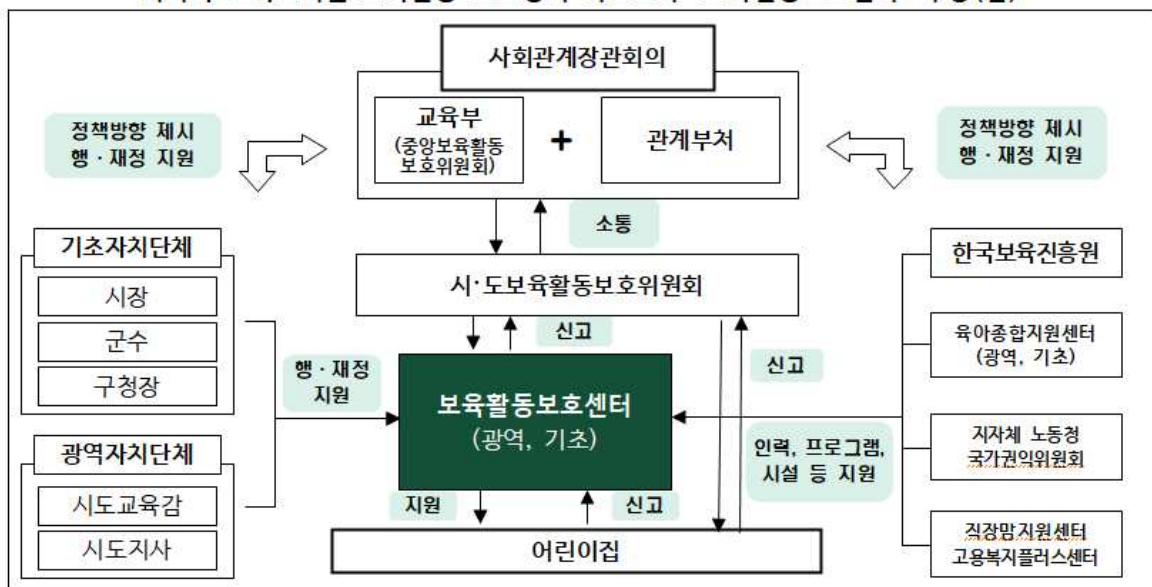
〈보육활동보호센터 보육활동 보호 관련 지원 절차〉



※ (25) 한국보육진흥원 시범운영(‘담풀’) 및 근거 마련 → (26) 19개소(중앙 및 광역 단위 설치) → (27~) 기초단위 설치 추진

- (기관 간 연계·협력)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관련 부처별 정책정보, 프로그램, 홍보자료 등을 공유하고, 각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 내 확산

지역의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정책 허브로서 “보육활동보호센터” 구상(안)



- (형사 분쟁 보험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분쟁 중 형사 분쟁 관련 보험 지원 근거 마련('25.下~)
  - ※ ('25) 8.83억원(79곳) → ('26) 28억원(226곳) → ('27) 27억원 → ('28) 27억원
  - ※ 보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적 책임은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 배상책임공제(의무가입)에서 보장 중임(지방비)
- 지자체의 보험 가입 지원(변호사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보호 강화
  - ※ 보장범위 안내(6월) → 시도별 '26년 예산 반영(9월) 및 적용('26~) (보육이동 현원 1인당 35천원)(지방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중 형사 분쟁 관련 보험 가입 표준 약관(안)〉

현 행	개선안 《표준 모델안》	
<p style="text-align: center;"><b>시·도지자체별로</b> 보육교직원 형사 분쟁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b>지원범위 상이</b></p> <p>※ ('25) 226개 중 79곳 지자체 형사 분쟁 보험 가입 → ( '26) 모든 지자체 가입 권고</p>	단 계	약관 구성안
	사안 발생 및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 컨설팅 및 합의조정</li> <li>•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li> </ul>
	지자체 조사 및 경찰서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 및 합의 조정</li> <li>• 형사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li> <li>•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li> <li>• 상해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li> <li>• 심리 상담 지원</li> <li>•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li> </ul>
	검찰 수사 및 법원 송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방어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보상</li> <li>• 심리 상담 지원</li> </ul>
	법원 재판 및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방어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보상</li> <li>• 심리 상담 지원</li> <li>• 무죄 시 보상 및 배상</li> <li>• 유죄 시 과실치사.상 관련</li> <li>• 소송 비용 보상 및 배상</li> </ul>

- ※ (예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보육활동 침해사안의 공정한 심의와 구속력 있는 조치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의 실질적 해결

#### 주요 추진과제

- 독립적 분쟁조정 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25~)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및 침해보호자 조치 기준 마련 ('25.~)
-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 ('25.~)

### 가.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및 효과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중재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25.~)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및 침해보호자 조치기준 법제화('26.~) 이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수행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25.~)

- ① (기능)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성)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25.上)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호에 따른 위원회 인력 등 확보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25.~)
  - ※ 시·도 조례로 기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위원이 있는 경우 기능 수행 가능
- ① (기능)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분쟁의 조정, 시책 수립 심의 등
- ② (구성) 과장급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호자, 변호사 및 보육활동 전문가 등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25.)
- ③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호에 따른 위원회 인력 등 확보

## 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조치 기준 마련

- (실효적 보호제도 마련) 보육활동의 침해의 명확한 기준과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실효적 보호제도 마련
  - ※ ('25)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 ('26) 「영유아보육법」 조문 신설
- (보육활동 침해기준 구체화) 보육활동 침해유형, 침해행위 주체, 침해행위 대상 등 세부기준 설정

### <보육활동 개념 및 유형(예시)>

- (침해행위)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소속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
- (침해유형) 형법(무고,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명예훼손, 무단촬영 및 녹음·배포행위), 반복적 민원제기, 부당강요, 간섭, 생활지도 방해 등
- (침해 대상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침해 행위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호자 ('24.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체계 개발)

- (침해 보호자 조치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26~)을 통해 보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벌칙·과태료 등 부과 근거 마련
  - 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조치\* 명령
    -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 (예시) 교원지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비공개

### ② 관할청은 직무상 자료 누설 시 **벌칙 및 특별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 (예시) 교원지위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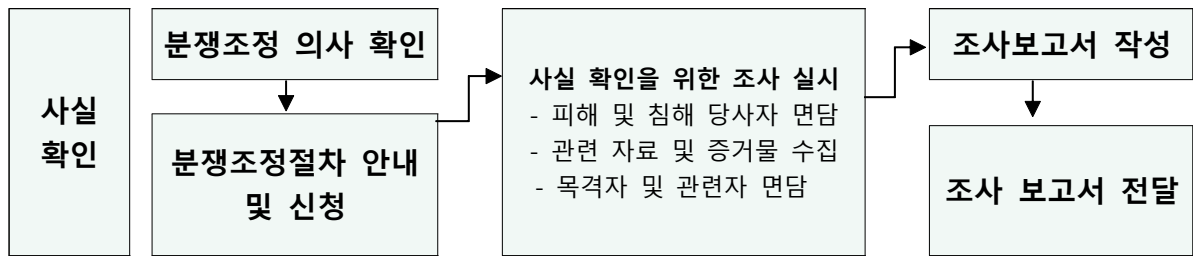
※ (예시) 교원지위법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5항 또는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다.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

○ (분쟁조정 절차 마련)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 심의를 위한 분쟁조정 세부절차 마련 (‘26.~)

① (사실조사 근거)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근거 마련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 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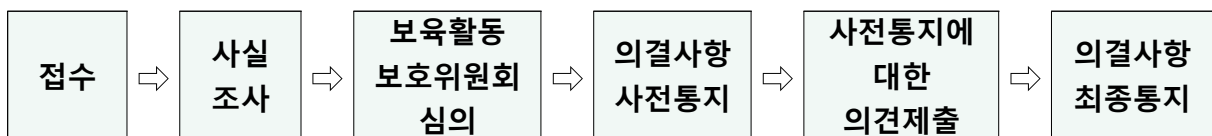
② (비밀누설 금지 근거) 보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상 알게 된 정보 (보육활동 침해행위자, 피해보육교직원 관련 자료 등) 누설 금지 조항 신설

※ (예시)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보육활동분쟁조정매뉴얼(‘26~) 제작을 통해 보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조정 세부 절차 및 기준 안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심의 및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예시)〉



※ 심의 의결사항 최종 통지 전,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 4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

◇ 어린이집-지자체-국가차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문화 조성 및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마음건강 지원

### 주요 추진과제

-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25.~)
- 희망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상담·치유 지원('25.~)
- 교사-보호자 상호 존중을 위한 캠페인('25.~)

### 가.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 (보호자 인식 개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련 심의를 활성화 하여, 보호자들의 보육활동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
- (어린이집 활용 콘텐츠 보급)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홍보 콘텐츠 제작('25~)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홍보 콘텐츠 공유·활용 방법 안내 및 지역 내 확산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홍보 콘텐츠〉



### 나.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 (마음성장 지원) 희망하는 모든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치유가 필요한 보육교직원은 정서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추천 및 연계 운영 확대 검토
  - ※ ('25) 13억원(25천명) → ('26) 23억원(62천명) → ('27) 25억(68천명) → ('28) 28억(75천명)

## 비공개

- ① (정서역량 진단) 보육교직원 스스로 자신의 강점, 취약점을 알아보고 추천 교육 수강을 위한 상시적 자기진단 점검체계 운영  
※ (절차) 온라인 자기이해테스트 → 개별 진단결과 제공 및 결과 해석 → 추천 마음성장 프로그램 참여
  - ② (맞춤 교육) 마음성장 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정서치유(힐링) 프로그램, 체험형(지역탐방형, 숲치유, 문화예술공연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 ③ (보육교직원 맞춤 심리건강 검사도구 운영) 온라인을 통한 보육교직원 심리건강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회복프로그램 제공('25.下)
- (심리상담 지원)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서상담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활동 침해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확대 검토
- ※ ('25) 22백만(72개소) → ('26) 31백만(86개소) → ('27) 46백만(140개소) → ('28) 61백만(140개소)

## 다. 교사-보호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지자체 책무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 ※ ('25) 광역단위 지자체 12곳, 기초단위 지자체 49곳 → ('29) 모든 지자체 확대
- 시·도 및 어린이집 단위로 보육 3주체(지자체·보육교직원·보호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보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등 존중문화 조성
- (캠페인) 모두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 존중 캠페인' 추진
- (어린이집 존중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가 참여한 존중 캠페인 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육 현장 확산

〈보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확산 홍보물 예시〉

## 보육활동 보호 실천사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활동보호 실천사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경기도 양명시 시립무지개어린이집)

### 교사의 권익보장, 아이의 행복 보장

보육교직원과 가정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살펴보기', '표현하기', '함께하기' 세 단계의 보육활동 보호 실천을 통해 보육활동 보호 현장을 만들고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천했어요

살펴보기



학부모가 보육활동 보호 문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지해요!



보육환경과 학부모를 잘 알고 있는 원장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고충을 털어놓아요.

표현하기



학부모가 보육교사 관리존중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투표도 진행해요!



존중 우체통에 보육교직원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서 전달해요.

함께하기



관리존중 인사를 통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존중심을 길러요!



키즈노트 관련 의사소통 에디터를 알리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변화했어요



가정과 보육교직원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육활동 보호 현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느꼈으며,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보육교직원-보호자 상호 존중을 통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기별 SNS 릴레이\* 캠페인 운영

\* 분기별 릴레이 캠페인 주제(교육부 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 연계)

#선생님덕분에(3~5월), #친구덕분에(6~8월), #부모님덕분에(9~11월), #어린이집덕분에(12~2월)

- 20 -

## V. 추진주체별 역할

-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집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추진주체 간 연계·협력 및 소통강화

〈 추진주체별 역할 〉

추진주체	역 할
<p style="text-align: center;"><b>교육부</b>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p>	<p>(계획 및 방향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관리</li> </ul> <p>(법령 제.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정비</li> </ul> <p>(부처 간 협력 및 보육활동 보호 자원 관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li> <li>•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중앙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li> <li>• 관계부처 협력 및 전국 단위 자원 발굴 및 지자체 연계</li> </ul> <p>(역량 강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 보육활동 보호 시책 홍보 및 보육활동 존중문화 캠페인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지자체</b>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p>	<p>(시행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li> </ul> <p>(지역 내 보육자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조례 제정 추진</li> <li>• 시·도별 보육교직원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li> <li>•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운영</li> <li>• 시·도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li> <li>• 보육활동 보호시책 홍보 및 보육활동 존중문화 캠페인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어린이집</b></p>	<p>(시행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행계획 집행</li> </ul> <p>(어린이집 운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안내 및 소통 활성화</li> <li>• 보육활동 관련 침해 사안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활성화</li> <li>• 보육활동 보호시책 홍보 보육활동 존중 문화 캠페인 실시</li> </ul>

## VI. 향후 추진일정

- 「영유아보육법령」 제·개정 ('25.~)
- 「보육활동보호센터」 근거 마련('25.) 및 확대('26.~)
  - ※ ('25) 시범운영 및 설치 근거 마련 → ('26) 19개소(광역단위 설치) → ('27~) 기초단위 설치 추진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25~)
  -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및 침해보호자 조치기준 법제화('26.~) 이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수행
- 보육교직원 존중 문화 조성 ('25.~)

추진과제별 일정(안)

과제	중점 추진시기					비 고
	'25	'26	'27	'28	'29	
<b>1.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b>						
<b>①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마련</b>						
· 어린이집 원장.교사 생활지도 고시 제정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작 배포	✓					
<b>② 보육교직원-보호자 간 상호 소통 활성화</b>						
·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 개발.보급		✓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교직원 대상 부모상담.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육	→					
<b>③ 보육활동 침해 예방</b>						
·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법제화	✓					교육부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	→					
<b>2.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b>						
<b>①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마련 및 자체 조정역 강화</b>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부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 원내 업무담당자 지정	→					
· 보육활동 침해사안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					
· 피해교원 보호조치 근거 마련	✓					

과제	중점 추진시기					비 고
	'25	'26	'27	'28	'29	
<b>③ 피해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강화</b>						
•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근거 마련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확대		→				
• 지자체 형사 분쟁 보험 지원 근거 마련	✓					
• 지자체 형사 분쟁 보험 지원 확대		→				
<b>3.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분쟁의 조정 지원</b>						
<b>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b>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지자체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b>②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및 침해보호자 조치 기준 마련</b>						
• 영유아보육법 개정하여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개정하여 침해 보호자 조치 근거		✓				
<b>③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절차 마련</b>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밀누설 금지 근거 마련	✓					
• 보육활동 분쟁조정 매뉴얼 제작		✓				
<b>4.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b>						
<b>①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b>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심의를 통한 보육활동 존중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활용 보육활동 침해 인식 제고 및 존중 문화 조성 홍보 콘텐츠 제작	✓					
<b>②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b>						
•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운영 확대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 확대		→				
<b>③ 교사-보호자 상호 존중 문화 조성</b>						
• 지자체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 시.도 및 어린이집 단위 권리존중 보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				
• 상호존중 문화 조성 온라인 캠페인 실시		→				
• 어린이집 존중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		→				

참고1 주요 통계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개소)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7,387	6,521	1,171	507	8,181	9,586	116	1,305

\* 유치원수 총8,441개소(국·공립 5,133개소, 사립 3,308개소)

□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941,303	293,049	50,377	20,778	373,524	139,172	2,662	61,741
남	487,591	152,137	26,660	10,685	193,304	71,445	1,436	31,924
여	453,712	140,912	23,717	10,093	180,220	67,727	1,226	29,817

\* 유치원 원아 수 총521,794명(국·공립 152,661명, 사립 369,133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급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총 계	원장	보육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특수 교사
		소계	담임 교사	대체 교사	방과후 보육 교사	24시간 보육 교사	야간 연장 교사 (월급형)	야간 연장 교사 (단시간)	보조 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이상)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미만)	대체 교직원	연장 보육반 전담 교사	비담임 (선임) 교사	소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남	9,146	674	994	548	7	26	4	93	0	167	47	55	0	40	7	32	3	29	6	92	7,266	82	
여	287,921	26,570	222,640	157,223	2,879	222	138	4,324	159	32,987	1,296	5,036	6	17,859	514	692	333	359	871	26,467	9,460	1,221	
계	297,067	27,244	223,634	157,771	2,886	248	142	97,324	159	33,154	1,343	5,091	6	17,899	521	724	336	388	877	26,559	16,726	1,303	

\* 유치원 교원 수 55,637명(원장 3,624명, 원감 2,101명, 수석교사 19명, 보직교사 2,938명, 교사 37,923명, 특수교사 1,162명, 보건교사 46명, 영양교사 174명, 기간제 교사 7,650명)

□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 설치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20명 이하	21~39명	40~49명	50~80명	81~99명	100~160명	161~200명	201~240명	241~300명	300명 초과	
합계	소 계	27,387	10,391	4,745	2,940	4,733	2,452	1,533	333	125	131	4
	국공립	6,521	623	1,320	1,163	2,231	830	311	33	6	4	0
	사회복지법인	1,171	4	113	137	333	334	191	43	8	7	1
	법인·단체등	507	4	108	81	163	87	49	10	3	2	0
	민간	8,181	6	2,986	1,245	1,665	1,060	848	204	86	78	3
	가정	9,586	9,586	0	0	0	0	0	0	0	0	0
	협동	116	62	30	14	3	4	3	0	0	0	0
	직장	1,305	106	188	300	338	137	131	43	22	40	0

\* 유치원수 총8,441개소 (20명 미만 3,383개소, 20~29명 557개소, 30~39명 518개소, 40~49명 459명, 50~79명 924개소, 81~99명 538개소, 100~149명 1,033개소, 150~199명 521개소, 200명 초과 463개소)

**비공개**

□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설립 주체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941,303	293,049	50,377	20,778	373,524	139,172	2,662	61,741
0세	119,978	119,978	30,494	3,642	1,443	39,310	41,215	105
1세	228,615	228,615	70,163	8,284	3,513	79,841	53,026	318
2세	253,802	253,802	80,537	11,179	4,496	98,022	44,065	589
3세	127,489	127,489	43,686	9,448	3,964	57,526	471	550
4세	105,360	105,360	34,296	8,061	3,573	49,318	214	571
5세	101,685	101,685	32,857	7,866	3,343	48,592	171	526
6세 이상	4,374	4,374	1,016	1,897	446	915	10	3

\* 유치원 원아수 총521,794명(만 3세 이하 131, 691명, 만4세 180,701명, 만5세 209,202명, 만6세 198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설립 유형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162,096	49,654	7,620	3,096	58,325	32,650	430	10,321
남	518	66	76	11	220	94	3	48
여	161,578	49,588	7,544	3,085	58,105	32,556	427	10,273

\* 유치원 교원수 55,637명(국·공립 23,975명, 사립 31,662명)

□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2024. 12. 31. 현재

구 분		설립 주체별								
		총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278	44	30	13	152	39	0	0
	아동	아동정원	11,629	2,114	1,664	525	6,546	780	0	0
		영아아동현원	7,868	1,742	837	356	4,305	628	0	0
		보육교직원	영아반보육교사	1,839	385	187	87	1,019	161	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78	52	99	5	22	0	0	0
	아동	아동정원	8,332	2,063	5,187	277	805	0	0	0
		장애아동현원	5,895	1,579	3,544	195	577	0	0	0
		보육교직원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2,605	683	1,581	85	256	0	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718	1,364	61	44	224	7	3	15
	아동	아동정원	139,362	106,357	6,019	3,540	20,770	136	96	2,444
		장애아동현원	6,857	5,078	263	255	1,202	6	7	46
		보육교직원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2,557	1,936	90	92	414	2	4
방과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30	29	30	25	43	1	0	2
	아동	아동정원	11,752	2,430	3,461	1,845	3,702	20	0	294
		방과후아동현원	925	252	71	329	229	0	0	44
		보육교직원	방과후반보육교사	78	26	13	20	16	0	0
야간 연장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7,345	3,301	299	125	1,560	1,887	6	167
	아동	아동정원	398,346	205,820	25,668	8,896	103,934	34,854	224	18,950
		야간연장아동현원	20,460	6,105	720	369	6,242	5,981	37	1,006
		보육교직원	시간연장보육교사	5,330	1,816	202	110	1,642	1,272	7
휴일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267	149	33	11	41	25	0	8
	아동	아동정원	18,351	10,603	2,886	1,022	2,488	470	0	882
		휴일아동현원	261	128	49	0	39	27	0	18
		보육교직원	휴일반보육교사	134	70	20	2	20	11	0
24시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27	51	10	2	28	34	0	2
	아동	아동정원	6,982	3,654	598	198	1,691	643	0	198
		24시간아동현원	337	65	35	5	148	84	0	0
		보육교직원	24시간보육교사	105	24	7	3	43	25	0

\*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현황 (재원 어린이집 현황 10,968개소 29,462명 재원)

\*\* 일반어린이집(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현황 677개소 905명, 방과후 보육현황 193개소, 2,072명

'24년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보호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개요

- (목적)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겪는 고충과 권리침해 문제에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 (대상) 전국 소재 유형별(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 원장 349명, 교사 433명
- (기간) 예비조사 2024.4.29.~ 5.1, 본조사 2024.5.2. ~ 5.12.
- (방법) 온라인 조사

□ 보육활동 침해 경험

- 원장의 64.8%, 교사의 54.5% 직접 경험 응답, 빈도는 원장과 교사 모두 2~3회가 각각 39.4%, 37.6%로 높게 응답, 다음으로 1회가 23.5%, 28.5%

보육활동 침해 직접경험 여부 및 빈도

구분	직접경험 여부			직접경험 빈도						
	있음	없음	계(수)	1회	2~3	4~5	6~7	8~10	11회 이상	계(수)
원장	64.8 (226)	35.2 (123)	100 (349)	23.5 (53)	39.4 (89)	18.1 (41)	6.6 (15)	3.5 (8)	8.8 (20)	100 (226)
교사	45.5 (197)	54.5 (236)	100 (433)	28.4 (56)	37.6 (74)	13.7 (27)	3.6 (7)	3.6 (7)	13.2 (26)	100 (197)

□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식

- 원장과 교사, 침해를 당한 경우 퇴사 혹은 이직을 한 비율이 63.8%, 56.9% 응답

보육활동 침해 유형 및 대응 방법

구분	원장	교사	비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참았음	15.5(35)	26.4(52)	
무조건 보호자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함	32.3(73)	42.6(84)	
가족이나 지인에게 하소연을 함	32.7(74)	46.2(91)	
퇴사 혹은 이직을 함	68.6(155)	56.9(1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교사)들과 대응 방안을 상의함	59.7(135)	28.4(56)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함	9.7(22)	3.6(7)	
외부 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함	4.9(1)	10.2(20)	
법적으로 대응함	1.3(3)	0.5(1)	
기타	4.4(10)	0.5(1)	
계(수)	229.1(518)	215.3(424)	

□ 보육활동 보호센터 효과적 운영 방안

- ① 고충처리 관련 소통창구의 마련 >> ②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체계 구축 >> ③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해결 시스템 >> ④ 전담인력의 전문성

□ 보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업무 분야

- ① 고충상담 및 전문상담(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 ② 분쟁 발생 시 중재 >> ③ 분쟁 심의 >> ④ 권익 보호 교육 >> ⑤ 법적 대응 비용 지원